

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134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4. 28.

제 안 자 : 의회 · 행정위원장

□ 제 안 경 위

- 4월 25일 권영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의회 · 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, 4월 25일 제1차 의회 ·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,
- 4월 28일 제4차 의회 · 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 심사 의결하여 동 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.

□ 제 안 이 유

- 의장 · 부의장 선거시 의장 ·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고,
- 시정질문을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이나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의장·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8조)

-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으며, 시정 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6조의2)

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2(시정에 관한 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③일문일답의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2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.

⑤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~④ (생략) <u>< 신 설 ></u>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~④ (현행과 같음) <u>⑤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66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 (생략) <u>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u> <u>< 신 설 ></u></p>	<p>제66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u>< 삭 제 ></u></p> <p>제66조의2(시정에 관한 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②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③일문일답의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④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⑤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